

「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9월 25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10월 13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올림픽체육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스포츠마케팅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「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고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사무를 포괄할 수 있는 「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유진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 「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 제출
- 제안일자 : 2025. 9. 25.
- 회부일자 : 2025. 10. 13.
- 상정일자 : 2025. 10. 13.

2. 제안이유

- 스포츠마케팅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「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고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사무를 포괄할 수 있는 「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.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자체는 조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을 자치사무로써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28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스포츠마케팅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,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5. 종합검토의견

- 스포츠산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본 조례는 입법 목적과 기능 등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

[시행 2015.12.31]

(일부개정) 2015.12.31 조례 제219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평창군의 스포츠산업 · 관광산업 육성,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’(이하 “전지훈련 선수단”이라 한다)이란 보다 나은 체력, 기술의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 · 외 학생(초,중,고,대학) 및 실업팀, 프로팀, 생활체육단체, 동호인 등이 평창군내에서 각종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훈련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· 시행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(이하 “유치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
2. 전년도 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
3. 전지훈련 유치 및 교통, 숙박,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

4.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

제5조(전지훈련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)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전지훈련유치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로 한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전지훈련시설 운영·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
3.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
4.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<삭제 2015.12.31>

제9조(위원회의 임기)<삭제 2015.12.31>

제10조(회의)<삭제 2015.12.31>

제11조(수당 등)<삭제 2015.12.31.>

부칙 <2012.1.6, 조례 제199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12.31. 조례 제219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48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25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스포츠마케팅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「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고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사무를 포괄할 수 있는 「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(2025. 8. 22. ~ 2025. 9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1255호, 올림픽체육과-8044(2025. 8. 21.)호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3198(2025. 8. 25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13198(2025. 8. 25.)호]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비대상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4601(2025. 9. 16.)호]

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14834(2025. 9. 19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

폐지조례안

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현행 조례]

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

(제정) 2012.01.06 조례 제1995호

(일부개정) 2015.12.31 조례 제219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평창군의 스포츠산업·관광산업 육성,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’(이하 “전지훈련 선수단”이라 한다)이란 보다 나은 체력, 기술의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·외 학생(초,중,고,대학) 및 실업팀, 프로팀, 생활체육단체, 동호인 등이 평창군내에서 각종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훈련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

치계획(이하 “유치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
2. 전년도 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
3. 전지훈련 유치 및 교통, 숙박,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
4.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

제5조(전지훈련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)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로 한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전지훈련시설 운영·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
3.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
4.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<삭제 2015.12.31>

제9조(위원의 임기) <삭제 2015.12.31>

제10조(회의) <삭제 2015.12.31>

제11조(수당 등) <삭제 2015.12.31>

부칙 <2012.1.6, 조례 제199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12.31. 조례 제219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췌

지방자치법 [법률 제19951호]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
연락처	(033) 330 - 2018